

<b>건설기계 등록·검사증</b>			
발급번호:		최초등록일:	
제작년도:			
등록 사항	건설기계의 표시		
	건설기계명		등록번호
	형식		규격
	원동기형식		차대일련번호
	사용본거지		
	소유자의 표시		
	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
	주소		
위 건설기계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		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
시·도지사 <span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margin-left: 50px;">직인</span>			
※ 1.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,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. 2.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(법인)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			

1. 주요제원			
형식승인번호 :			
길이	mm	너비	mm
높이	mm	총중량	kg
주행방식		정격출력	PS/RPM
기통수	기통	연료종류	
2. 저당권등록사실			
구분(설정 또는 말소)	일자		
*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
3. 작업장치	
※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	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	설치 (    )
대형건설기계 표지	설치 (    )
※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해야 합니다.	

**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**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)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**건설기계등록·검사증**

시 · 도 지 사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5. 등록사항변경란			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	연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 :								
* 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 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